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-5014호

「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9. 18.

경 기 도 지 사

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(2025.7.18. 시행)에서 위임한 사용료 및 감면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를 규정함(안 제2조 및 별표 1).

나.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감면대상 외의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별표 2).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‘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(참조 : 반려동물과장, 주소: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1-2 문화센터 2층, 전화: 031-8030-4482, 팩스: 031-8008-6219, 전자메일: fly3sky@gg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경기도 규칙 제 호

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료) 「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사용료 감면)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사용료(제2조 관련)

구분	사용료	비 고
화장시설	○ 반려동물 체중 구간별 사용료 - 1kg 이하: 10만원 - 1kg 초과 5kg 이하: 20만원 - 5kg 초과 시: 1kg당 9,000원씩 추가 ※기본사항(화장, 기본염습, 기본유골함) 포함	선택사항(관, 수의, 고급유골함 등)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여 누리집 및 시설 내 게시
봉안시설	○ 구역별 사용료(사용기간: 1년기준) 1층: 10만원 2층 · 6층: 20만원 3층 · 5층: 30만원 4층: 40만원	봉안함 1기당 유골함 1기를 원칙으로 함

[별표 2]

사용료 감면대상(제3조 관련)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: 화장시설의 사용료 50% 감면
2. 여주시민: 화장시설의 사용료 50% 감면
3. 경기도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: 화장시설의 사용료 50% 감면
 가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 나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
4. 경기도민: 화장시설의 사용료 10% 감면

[비고]
가. 사용자의 동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이어야 함
나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
다. 각 호의 감면대상에 중복 적용되어도 감면 비율을 합산하지 않음

소관 실・국		축산동물복지국
입안자	실・과장 직위・성명	반려동물과장 변희정
	담당・팀장 직위・성명	반려동물산업팀장 주동욱
	담당자 성명・전화	지방수의사무관 배진규(8030-4482)